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비 현황 및 변화 추이

박찬웅\* · 구영주\*\* · 김현경\*\*\* · 신주원\*\*\*\*

### Special Education Expense Status and Trend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and the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Park, Chan Woong\* · Gu, Yeong Ju\*\* · Kim, Hyun Kyung\*\*\* · Shin, Ju Won\*\*\*\*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 education budget is secured and is distribu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education policies in Korea by examining the special education budget and its changes in the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from the first to the fifth period. The study thus aimed to present an appropriate budget allocation and execution plan for future effective special education policies. **[Method]** Several papers were reviewed using the many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and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from 1997 to 2020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nd the OECD Education Index were analyzed and compared. **[Results]** First, although the per capita special education expense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they show irregular increases and decreases by province,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Second, the special education budge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compared to the GDP, total education budget, and public education budget. Third,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total budget for special education consists of labor costs, as accounting for more than 50-60%. **[Conclusion]** To propose the policy directions according to the special education budget and to accurately evaluate the degree of policy implementation, a unified, clear, and more detailed standard is needed. Moreover, research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to compare the finances of special education in developed countries and in Korea and to understan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and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Key Words:**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education budget

-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fory4194@korea.kr)  
Doctoral student, Daegu University
-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Doctoral student, Daegu University
-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Doctoral student, Daegu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더불어 취약 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에 많은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에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가늠자는 국가 주도의 특수교육 정책과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지원 제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이후 30여 년 동안 9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94년 전면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장애인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김병하, 2005). 하지만 행정가와 교육전문가 중심의 법령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교육부, 2020; 황정보, 이선재, 안병주, 강경희, 김청아, 2007).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장애인교육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김원경, 한현민, 2007; 류재연, 2012)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폐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제정되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영아에서부터 전공과까지 무상교육 실시, 유아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조기발견 체계 구축,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규정 신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규정 신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신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확대로 특수교육 수혜율 증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증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충, 고등교육 기회 제공으로 진학률 증가 등은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을 평가하는 주된 지표가 되고 있다(김원경, 이석진, 김은주, 권택환, 2010; 김종무, 2018). 이와 같이 「특수교육진흥법」의 대안으로 제정되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교육정책의 방향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까지 18차례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끌어내기 부족하다(교육부, 2020)는 평가에 따라 현재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이다.

한편 법적·제도적 변화 외에도 특수교육은 「제1차~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양적·질적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해 왔다. 제1차 계획(’97~’01)과

제2차 계획(’03~’07)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시행되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제1차 계획에 이어 제2차 계획을 2002년에 발표하지 아니하고, 한 해 걸러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해인 2003년에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체제로 운영되었다(교육부, 2016).

제3차(’08~’12), 제4차(’13~’17), 제5차(’18~’22)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던 동안에 적용되었다.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였던 2008년 5월 26일 자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다수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특수교육의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였던 2011년에는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교육부, 2016). 그리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 관련 지원 실태 및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거시적 사회 변화의 조류, 그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의 급변 추이, 특수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내용을 계획 수립의 논리적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 정부의 현재적 상황과 발전 전망 및 그 요건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설정되고 수립된 계획이므로 지방 특수교육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자명하다.

이상의 국가정책과 비교적 현대적 관점의 변화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까지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무려 28차례 제·개정을 하며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정 법 실행을 위하여 특수교육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여 왔다(교육부, 2020)고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법 개정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한 것인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공교육비 증가, GDP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제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97~’01)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가입한 이후,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OECD 가입 당시 13,402달러에 불과했던 국민 1인당 GDP가 2020년 31,440달러로 무려 2.3배 증가하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1). 게다가 2021년 7월 2일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것이 가결되었는데 이는 국

민 1인당 GDP 증가, 경제 성장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시행되기 직전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과 관련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특수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법 개정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요구 등에 기인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의무교육 확대와 특수교육 체제의 기반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전향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다섯 차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성안과 추진으로 통합교육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확대 등 특수교육 질 제고와 내실화를 지향하는 실천적 성과를 견인하여 왔다고 여겨진다. 특히 2022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5주년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입안을 준비하는 현재적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혁신 결과와 정책적 추진 성과 및 그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분야의 이러한 추진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의 특수교육비 현황과 그에 따른 1인당 특수교육비 및 특수교육 항목별 비율을 핵심지표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특수교육비 예산의 편성과 책정에는 발전 목표와 전략 및 실행 계획 등을 모두 포괄하고 여타의 자료에 비해 변별성을 구현하고 있어 형식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가 정책의 목표, 전략, 실행 계획이라는 필수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연결되어 있어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제1차에서 제5차까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총예산 및 1인당 특수교육비 현황과 변화 추이, 시·도별 예산의 차이, GDP와 총 교육예산 및 일반 공교육예산 대비 증액의 정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 항목별 배분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개정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의 실효성을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제1차에서 제5차까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비와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및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 현황과 변화 추이를 밝힌다.

둘째, 우리나라 GDP, 총 교육예산,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 예산 변화 추이를 밝힌다.

셋째, 우리나라 특수교육비 항목별 비율과 변화 추이를 밝힌다.

## II.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제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1997년부터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 중인 2020년까지의 특수교육 예산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였다. 먼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등 검색엔진을 통해 특수교육 예산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엔진에 상용된 주제어는 ‘특수교육비’, ‘특수교육예산’,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교육비’, ‘GDP’ 등이며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통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연구 자료> 등의 자료를 검색하였다. 이 밖에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보도자료>,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지방 교육 재정 알리미> 등 홈페이지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국내 및 해외 특수교육 예산 관련 자료 및 논문이 거의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교육부에서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통계, 국가발전지표 등 국가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 2. 선정 기준

분석 자료에 대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매년 정기국회 보고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9월에 발간하는 자료로써, 특수교육정책 수행과 연관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둘째, 기간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7년 제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으므로 제1차부터 제5차까지 시기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되었으므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동안의 예산 변화 추이를 통해 법 제정이 특수교육 예산 확보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타 자료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통계, 국가통계포털, OECD 교육지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특수교육 예산과 비교하기 위하여 총 교육예산, 일반 공교육예산 등도 포함하였다.

### 3. 분석 기준

교육부에서 2005년부터 정기국회 보고 자료로 작성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총예산 및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 특수교육 예산 항목별 비율과 변화, 총 GDP 및 총 교육예산,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 예산 변화를 분석하였다. 단위가 달러인 GDP,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연도별 원달러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천원 단위로 환산하여 절산하였다.

그리고 OECD 교육지표(한국교육개발원, 2020)에서 ‘재정’에 관한 기준연도는 2017년이다. 즉,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7년 재정이므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의 특수교육비와 OECD 교육지표에 제시된 공교육비는 비교·분석이 불가하였으며, 제1차~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98~’17)까지 비교·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우리나라 및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 현황과 변화 추이

#### 1) 1인당 특수교육비 현황

본 연구에서 총 특수교육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005년부터 발간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1인당 특수교육비는 총 특수교육비를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는 2005

**Special Education Expense Status and Trend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and the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7**

년부터 발간되었으나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수교육비도 수록하고 있어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특수교육비도 인용·분석 가능하였으며, 우리나라 1인당 특수교육비 변화 추이는 <표 1>과 같다.

**<Table 1>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for Special Education Candidat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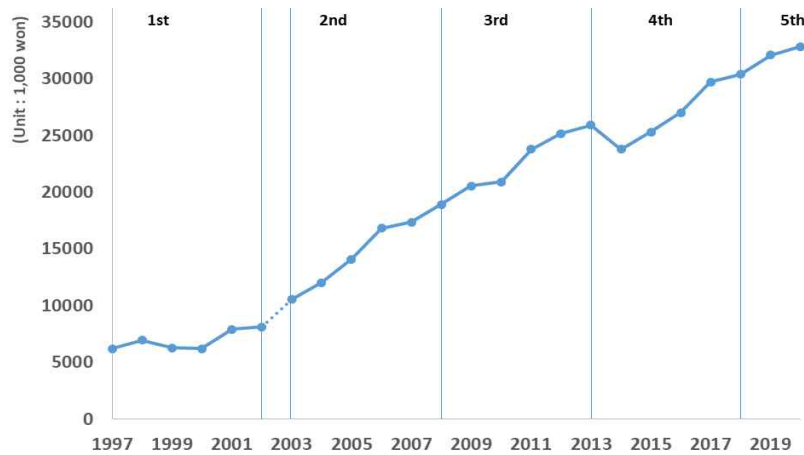
(Unit: 1,000 won)

5 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Year	Total special education expenses	Number of special education candidate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1st	1997	298,596,440	48,089	6,209
	1998	337,070,063	48,518	6,947
	1999	315,782,768	50,269	6,282
	2000	340,225,173	54,732	6,216
	2001	406,310,075	51,330	7,916
-	2002	443,073,183	54,470	8,134
2nd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3rd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4th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5th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 At the request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at that time, th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announce the 2nd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in 2002, but in 2003, so 2002 is presented as data of the overall budget increase and decrease.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차부터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까지 총 특수교육비, 특수교육대상자 수, 1인당 특수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7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총 특수교육비는 298,596,440천원에서 3,134,043,528천원으로 약 10.5배,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8,089명에서 95,420명으로 약 2배, 1인당 특수교육비는 6,209천원에서 32,845천원으로 약 5.3배 증가하였다.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1인당 특수교육비 증감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Figure 1>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for Special Education Candidate by Year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하던 2014년을 제외하고 1인당 특수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동안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특수교육 및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의 책무성이 뒷받침되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동안 1인당 특수교육비가 두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가 뒷받침이 되어 새롭게 제정된 법 시행과 정책 수행을 위해 특수교육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교육부 관련 자료에서 2014년 특수교육비가 감소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나,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2013년에는 만 3~4세로 적용 대상 유아 연령을 확대하면서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2014년 시·도교육청에서는 2조 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사업 예산을 축소, 폐지하였고 여기에는 특수교육 관련 예산도 포함되었다.

## 2)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

1인당 특수교육비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시·도간 비교·분석을 위해 교육부 재정으로 운영하는 국립 특수학교(급)을 제외하고 공·사립을 산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18~’22)의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 차이를 살펴보고 제6차(’23~’27) 예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예산을 기준으로



로 비교하였으며, 1인당 특수교육비와 평균은 <표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for Special Education Candidate by City/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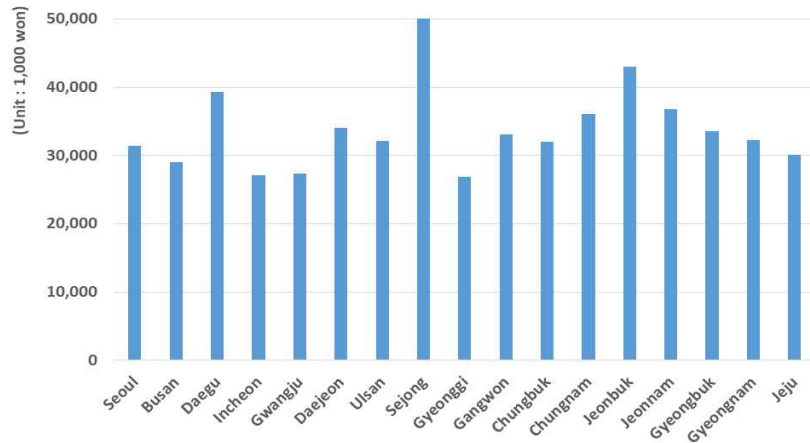
(Unit: 1,000 won)

Year City	2018			2019			2020			2018-2020 Average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Special education expenses	# of student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Special education expenses	# of student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Special education expenses	# of student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Seoul	361,475,059	12,208	29,610	380,238,528	12,230	31,091	415,894,533	12,377	33,602	<b>31,434</b>
Busan	158,786,213	5,914	26,849	179,006,997	6,034	29,666	188,801,378	6,208	30,413	<b>28,976</b>
Daegu	174,385,544	4,829	36,112	186,637,556	4,848	38,498	213,790,567	4,945	43,234	<b>39,281</b>
Incheon	143,866,953	5,768	24,942	185,240,367	6,003	30,858	158,642,617	6,218	<b>25,513</b>	<b>27,104</b>
Gwangju	74,003,430	2,803	26,402	78,577,483	2,847	27,600	82,201,065	2,943	27,931	<b>27,311</b>
Daejeon	90,274,526	3,325	27,150	116,980,654	3,257	35,917	127,274,716	3,276	38,851	<b>33,973</b>
Ulsan	84,397,557	2,588	32,611	85,842,839	2,579	33,285	79,706,202	2,615	30,480	<b>32,125</b>
Sejong	24,079,799	502	<b>47,968</b>	27,820,828	583	<b>47,720</b>	34,731,851	637	<b>54,524</b>	<b>50,071</b>
Gyeonggi	544,129,609	20,434	26,629	564,278,948	21,421	<b>26,342</b>	612,604,945	22,190	27,607	<b>26,859</b>
Gangwon	108,277,178	2,885	37,531	81,337,121	2,867	28,370	97,194,626	2,907	33,435	<b>33,112</b>
Chungbuk	94,041,807	3,982	<b>23,617</b>	127,889,947	3,943	32,435	162,876,089	4,097	39,755	<b>31,936</b>
Chungnam	161,808,240	4,480	36,118	170,934,024	4,607	37,103	164,462,791	4,681	35,134	<b>36,118</b>
Jeonbuk	134,384,058	3,555	37,801	170,771,614	3,681	46,393	165,969,767	3,693	44,942	<b>43,045</b>
Jeonnam	135,737,605	3,706	36,626	139,340,012	3,834	36,343	145,848,176	3,909	37,311	<b>36,760</b>
Gyeongbuk	173,980,764	4,846	35,902	180,240,154	4,973	36,244	147,003,722	5,167	28,450	<b>33,532</b>
Gyeongnam	203,125,968	6,409	31,694	206,317,610	6,604	31,241	230,441,863	6,810	33,839	<b>32,258</b>
Jeju	43,770,883	1,434	30,524	48,136,006	1,505	31,984	45,124,931	1,632	27,650	<b>30,053</b>
Total	<b>2,710,525,193</b>	<b>89,668</b>	<b>30,228</b>	<b>2,929,590,688</b>	<b>91,816</b>	<b>31,907</b>	<b>3,072,569,839</b>	<b>94,305</b>	<b>32,581</b>	<b>31,572</b>

※ Data from each city and province except for the national special school/class budget and the number of students.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1인당 특수교육비는 2018년 30,228천원, 2019년 31,907천원, 2020년 32,58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의 편차가 크며 불규칙적인 증감 현황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지역의 1인당 특수교육비는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지역의 1인당 특수교육비는 3년 연속해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세종은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18년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높은 세종과 가장 낮은 충북의 차이는 24,351천원이고, 2019년 가장 높은 세종과 가장 낮은 경기의 차이는 21,378천원이며, 2020년 가장 높은 세종과 가장 낮은 인천의 차이는 29,011천원이다.

<그림 2>는 최근 3년간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ure 2>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for Special Education Candidate by City/Province

최근 3년간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평균은 31,572천원이며, 시·도별 매우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높은 세종은 50,071천원이고, 가장 낮은 경기도는 26,859천원으로 세종의 53.6%에 불과하다. 세종은 2012년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으며, 특수학교로는 2015년 신설된 세종누리학교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높다.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4.6명, 4.6명, 4.5명이었으나 세종은 3.4명, 3.3명, 3.4명이었고, 최근 3년 특수학급학생 1인당 지원하는 유급보조인력 수가 전국 평균 0.1명이었으나 세종은 0.2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사 배치, 유급보조인력 확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거주 지역, 소득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 교육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가 현저하게 차이는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지원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제5차(’18~’22)의 시·도별 특수교육비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모든 시·도에서 균형 있고 평등한 특수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2. 우리나라 GDP, 총 교육예산,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예산 변화 추이

### 1) GDP 대비 특수교육비 현황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 중의 하나이므로 GDP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증감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GDP 대비 특수교육비와 1인당 GDP 대비 특수교육비는 <표 3>과 같다.

<Table 3> Special Education Expenses Compared to Total GDP

(Unit: 1 billion dollar, 1,000 w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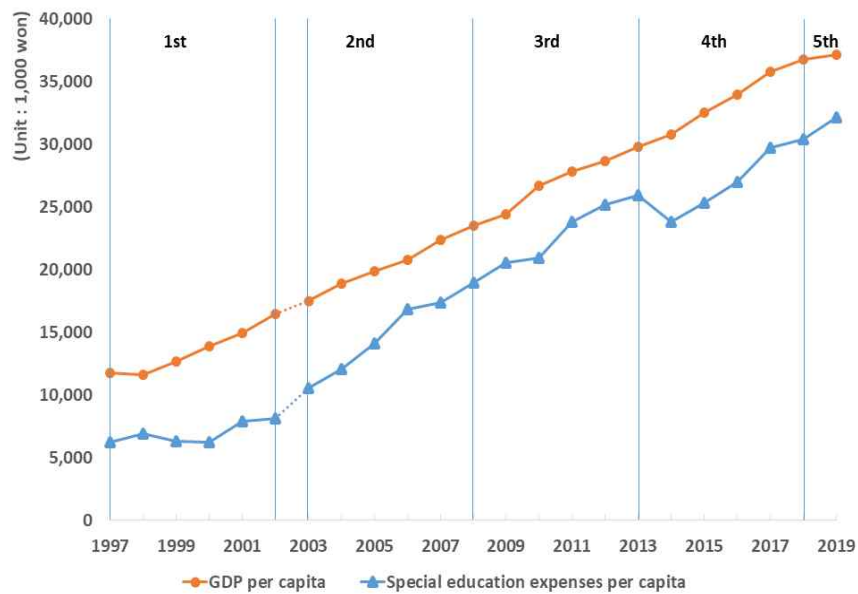
Year	Division	Total GDP (1 billion dollar)	GDP per capita	Total special education expenses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Total special education expenses compared to total GDP	Special education expenses compared to GDP per capita
1st	1997	569.9	11,795	298,596,440	6,209	0.055	52.6
	1998	384.0	11,607	337,070,063	6,947	0.063	59.9
	1999	497.2	12,688	315,782,768	6,282	0.053	49.5
	2000	576.4	13,862	340,225,173	6,216	0.052	44.8
	2001	547.7	14,926	406,310,075	7,916	0.057	53.0
-	2002	627.2	16,471	443,073,183	8,134	0.056	49.4
2nd	2003	702.6	17,484	564,394,700	10,568	0.067	60.4
	2004	793.6	18,894	666,840,034	12,042	0.073	63.7
	2005	934.7	19,871	822,051,094	14,085	0.086	70.9
	2006	1,052.4	20,760	1,051,284,265	16,810	0.105	81.0
	2007	1,172.7	22,383	1,145,295,143	17,369	0.105	77.6
3rd	2008	1,046.8	23,529	1,352,939,269	18,926	0.117	80.4
	2009	944.3	24,446	1,545,753,946	20,559	0.128	84.1
	2010	1,143.9	26,690	1,667,641,925	20,921	0.126	78.4
	2011	1,253.4	27,814	1,966,284,753	23,786	0.142	85.5
	2012	1,278.0	28,688	2,138,496,638	25,155	0.148	87.7
4th	2013	1,370.6	29,761	2,245,781,336	25,923	0.150	87.1
	2014	1,484.0	30,798	2,076,048,794	23,787	0.133	77.2
	2015	1,465.3	32,501	2,227,638,518	25,295	0.134	77.8
	2016	1,500.0	33,988	2,376,062,265	27,016	0.136	79.5
	2017	1,623.3	35,740	2,653,497,809	29,697	0.145	83.1
5th	2018	1,725.2	36,782	2,759,503,150	30,398	0.145	82.6
	2019	1,646.3	37,112	2,984,447,992	32,105	0.156	86.5
	2020	-	-	3,134,043,528	32,845	-	-

※ GDP was reduced in units of KRW based on the ‘average exchange rate of KRW per year’ of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al System’ and Total GDP is expressed as 1 billion dollars.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차부터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까지 총 GDP 대비 총 특수교육비, 1인당 GDP 대비 특수교육비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7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총 GDP 대비 특수교육비는 0.055%에서 0.156%로 약 2.8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 대비 특수교육비는 52.6%에서 86.5%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총 GDP 대비 특수교육비가 약 2.8배 증가한 데 비해, 1인당 GDP 대비 특수교육비가 약 1.6배 증가에 그친 이유는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1997년 48,089명에서 2019년 92,958명으로 약 1.9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

획 시기 동안 총 GDP 대비 특수교육비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제2차 동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제3차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7년 특수교육법 제정 이전 사회적 요구와 제정 이후 정책 수행을 위해 특수교육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는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특수교육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3> GDP and Special Education Expenses per Capita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GDP는 199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1인당 특수교육비도 1999년, 2000년, 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1인당 GDP 대비 52.6% 수준이었던 1인당 특수교육비가 2019년 86.5%로 증가하였다. 특히 제2차 계획 동안 1인당 특수교육비가 많이 증가하여 1인당 GDP와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제4차 시기인 2014년 1인당 특수교육비가 급감하면서 1인당 GDP와 1인당 특수교육비의 격차가 커졌으므로 2014년 특수교육비 급감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각종 특수교육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되었다면 교육 수준은 그 이상 후퇴하였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취약계층인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각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비 현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제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 따라서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과 복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도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는 2005년부터 발간되었으므로 제2차부터 제5차까지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변화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Table 4> Special Education Budget Compared to Total Education Budget

(Unit: 1,000 won, %)

Division		total education budget of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udget of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udget compared to total education budget	Year-on-year change	
					Total education budget	Special education budget
2nd	2005	30,661,989,190	725,785,853	2.37	-	-
	2006	31,148,429,551	935,366,338	3.00	1.59	28.88
	2007	35,062,391,605	1,145,295,143	3.27	12.57	22.44
3rd	2008	39,685,045,924	1,314,842,428	3.31	13.18	14.80
	2009	41,695,013,519	1,504,339,134	3.61	5.06	14.41
	2010	42,768,953,920	1,623,547,688	3.80	2.58	7.92
	2011	45,653,516,725	1,926,245,132	4.22	6.74	18.64
	2012	50,404,326,159	2,101,809,605	4.17	10.41	9.11
4th	2013	52,771,875,951	2,204,371,610	4.18	4.70	4.88
	2014	53,350,500,120	2,102,816,126	3.94	1.10	-4.61
	2015	55,878,247,529	2,179,562,387	3.90	4.74	3.65
	2016	57,448,363,978	2,323,602,767	4.04	2.81	6.61
	2017	62,875,504,496	2,604,889,277	4.14	9.45	12.11
5th	2018	69,028,073,153	2,710,525,193	3.93	9.79	4.06
	2019	75,772,865,743	2,929,590,688	3.87	9.77	8.08
	2020	75,556,083,330	3,072,569,839	4.07	-0.29	4.88

\* The total education budget includes the national treasury, local expenses, resident's income and other resources.  
 ※ 17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budget excluding the national special education budget (Sejong included from 2012)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과 특수교육 예산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총 교육예산은 코로나 19 상황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수교육 예산은 2014년을 제외하

고 전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교육예산은 2005년 30,661,989,190천원에서 2020년 75,556,083,330천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특수교육 예산은 2005년 725,785,853천원에서 2020년 3,072,569,839천원으로 약 4.2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2.37%였으나, 2020년에는 4.07%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때,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증가율 대비 특수교육 예산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일반학생 수는 2005년 8,368,134명에서 2020년 5,989,658명으로 28.4% 감소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2005년 58,362명에서 2020년 95,420명으로 38.8% 증가하였으며,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수가 2005년 0.7%였으나 2020년에는 1.6%로 약 2.3배 증가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각 시·도교육청 총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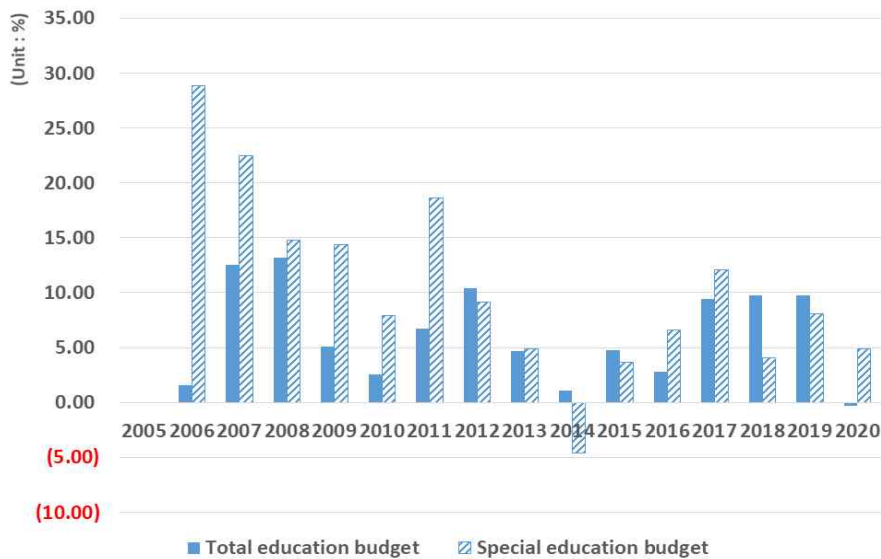


<Figure 4> The Ratio of The Special Education Budget to The Total Education Budget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005년 2.37%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이었던 2011년 4.2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차부터 제3차 계획 동안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에는 법의 시행과 정책 수행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인 2008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간의 증감 변화를 보이며 평균 4%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특수교육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예상과 크게 빗나간 결과이므로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의 적정 비율에 대하여 OECD 국가들과의 비교·분석도 필요하다.

<그림 5>은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중 대비 특수교육 예산 증감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Figure 5> Increase/Decrease Rate of Special Education Budget out of Total Education Budget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교육예산 및 특수교육 예산 증감률은 해마다 변동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 예산 증감률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2006년에 가장 높았으며, 제3차 계획 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은 표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비, 연수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2013년 대비 2014년 시설비가 대폭 감소하였고 이것이 2014년 특수교육 예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2014년 갑작스러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하게 되면서 인건비 등 경

직성 경비는 사실상 감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수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유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13년 대비 2014년 연수비 예산을 16.05% 감축한 것은 장기적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특수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Total Budget for Special Education in 2014 Compared to 2013

(Unit: 1,000 won, %)

Division	Total special education budget						
	Labor costs	Operating costs per class	Facility costs	Asset acquisition costs	Training costs	Etc	Total
2013	1,246,224,964	608,803,134	317,848,589	30,339,095	4,351,635	38,213,919	2,245,781,336
2014	1,297,249,152	638,946,164	137,714,986	41,103,713	3,653,312	34,440,192	2,153,107,519
Increase	51,024,188 (+ 4.1%)	30,143,030 (+ 5.0%)	-180,133,603 (- 56.7%)	10,764,618 (+ 35.5%)	-698,323 (- 16.05)	-3,773,727 (- 9.9%)	-92,673,817 (- 4.1%)

### 3)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비 현황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무 수준을 보여주는 교육 투입의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를 비교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공교육비는 <OECD 교육지표 2020>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연차보고서의 특수교육비 금액 단위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교육비 금액 단위인 달러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근거하여 ‘연도별 원달러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천원 단위로 절산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OECD 기준상 특수학교는 학교급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로,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로,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OECD 교육지표에 1997년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재정’에 관한 기준연도는 2017년으로 하고 있다. 즉,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7년 재정이므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의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는 비교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제1차 시기인 1998년부터 제4차 시기인 2017년까지 일반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를 비교·분석하였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비 증감 현황은 <표 6>과 같다.



<Table 6> Changes in Special Education Expenses Compared to Public Education Expenses per Student

(Unit: 1,000 won,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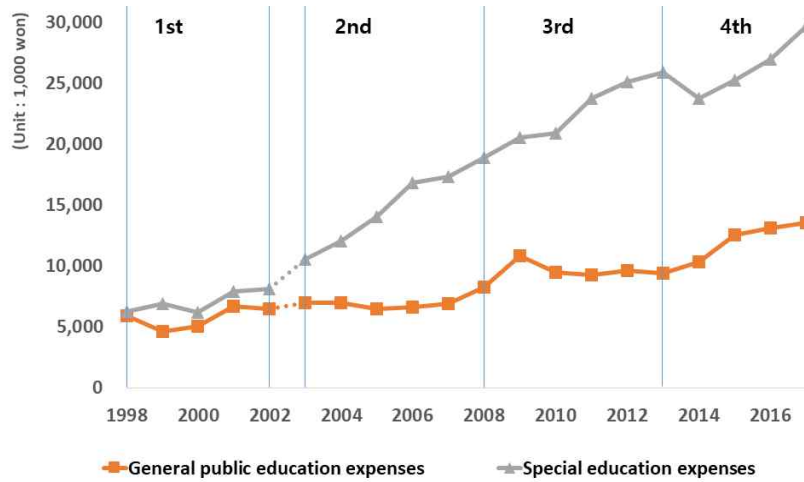
Division \ Year		1st				-	2nd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Public education expenses*	elementary	3,970	3,376	3,567	4,794	4,445	4,884	5,139	4,805	4,715	5,052
	middle	4,958	4,067	4,600	6,659	7,359	7,640	7,739	6,806	6,937	7,303
	high	8,891	6,371	6,917	8,542	7,566	8,449	8,090	7,790	8,182	8,288
	Average	5,940	4,604	5,028	6,665	6,456	6,991	6,989	6,467	6,611	6,881
Special education expenses		6,282	6,947	6,216	7,916	8,134	10,568	12,042	14,085	16,810	17,369
Ratio of Special Education Expenses to Average Public Education Expenses		1.06	1.51	1.24	1.19	1.26	1.51	1.72	2.18	2.54	2.52
Division \ Year		3rd				4th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Public education expenses	elementary	5,976	8,498	7,632	7,730	8,333	8,713	10,169	12,499	12,799	13,233
	middle	8,744	11,996	9,319	9,085	9,415	9,408	10,865	13,806	14,355	15,355
	high	10,012	12,142	11,530	11,000	11,117	10,209	10,079	11,438	12,169	12,024
	Average	8,244	10,878	9,493	9,271	9,621	9,443	10,371	12,581	13,107	13,537
Special education expenses		18,926	20,559	20,921	23,786	25,155	25,923	23,787	25,295	27,016	29,697
Ratio of Special Education Expenses to Average Public Education Expenses		2.30	1.89	2.20	2.57	2.61	2.75	2.20	2.01	2.06	2.19

\* Expenses were reduced in units of KRW based on the 'average exchange rate of KRW per year' of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al System.

※ There may be differences between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OECD and the statistics of the Annual Report on Special Education due to the differences of time and applied exchange rates.

<표 6>과 같이 제1차 시기인 1998년에는 공교육비 평균 대비 특수교육비가 비슷하였으나 이후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제2차 시기인 2005년부터 제4차 시기인 2017년까지 공교육비 평균 대비 특수교육비 비율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자료는 OECD 교육 지표에 나타난 초, 중, 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 초, 중, 고 과정별 1인당 특수교육비와 비교·분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과정별 특수교육비를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면 생애 전반에 대한 재정 운영 모델을 확립할 수 있으며, 과정별 특성화된 특수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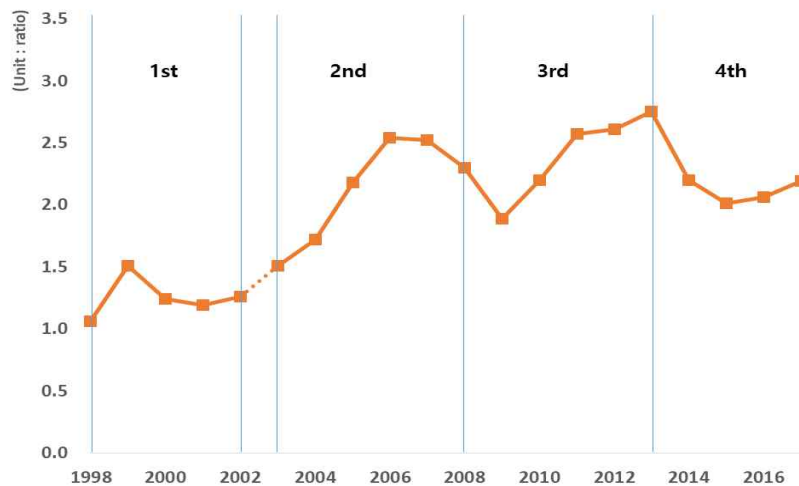
<그림 6>은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 증감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6> Special Education Expenses Compared to General Public Education Expenses per Student

<그림 6>에서와 같이 제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동안 특수교육비는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부터 서서히 차이가 벌어지면서 공교육비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제3차 이후에는 공교육비와의 차이를 유지하는 수준을 보이므로 법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7>은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동안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비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7> Ratio of Special Education Expenses to Public Education Expenses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비 비율은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시기 동안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제2차부터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배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비 비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은 우리나라 GDP가 증가함에 따라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가 동시에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3. 특수교육비 항목별 비율과 변화 추이

<표 7>은 특수교육 총 예산 중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등의 비율과 변화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정책 수행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7> Ratio by Item to The Total Budget for Special Education

(Unit: 1,000 w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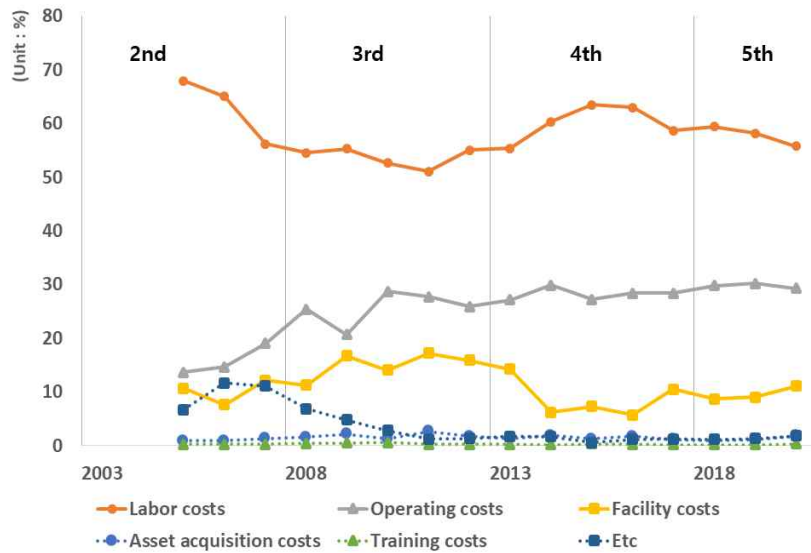
Division	Special Education Total Budget	Ratio by item						
		Labor costs	Operating costs	Facility costs	Asset acquisition costs	Training costs	Etc	
2nd	2005	725,785,853	67.90	13.64	10.66	0.87	0.24	6.69
	2006	935,366,338	65.07	14.59	7.61	0.86	0.26	11.62
	2007	1,145,295,143	56.17	19.02	12.14	1.30	0.26	11.10
3rd	2008	1,314,842,428	54.54	25.37	11.26	1.57	0.39	6.87
	2009	1,504,339,134	55.27	20.68	16.70	2.15	0.44	4.76
	2010	1,623,547,688	52.61	28.72	14.08	1.21	0.55	2.83
	2011	1,926,245,132	51.07	27.69	17.17	2.60	0.25	1.21
	2012	2,101,809,605	55.05	25.85	15.83	1.72	0.26	1.29
4th	2013	2,204,371,610	55.37	27.15	14.22	1.34	0.20	1.73
	2014	2,102,816,126	60.32	29.82	6.21	1.86	0.17	1.61
	2015	2,179,562,387	63.45	27.23	7.25	1.25	0.28	0.54
	2016	2,323,602,767	62.96	28.36	5.66	1.68	0.21	1.12
	2017	2,604,889,277	58.65	28.37	10.47	1.11	0.15	1.25
5th	2018	2,710,525,193	59.38	29.74	8.67	0.89	0.14	1.18
	2019	2,929,590,688	58.19	30.20	9.01	1.16	0.14	1.30
	2020	3,072,569,839	55.72	29.32	11.08	1.83	0.29	1.76

※ The total education budget includes the national treasury, local expenses, resident's income and other resources.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특수교육 총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인건비는 특수교육 총예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급

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순이다.

<그림 8>는 특수교육 총예산 중 각 항목별 예산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8> Ratio and Changes by Item to The Total Budget for Special Education by Year

<그림 8>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특수교육 총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며 그다음으로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순이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제2차 시기에는 인건비가 감소한 반면에 교급당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제3차 시기에도 인건비는 증가하지 않고 전체 예산의 50%대를 유지하였으며 교급당 운영비와 시설비는 증가하였다. 이는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을 위해 인건비 비율을 줄이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중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교육 관련 사업비, 통학비 및 급식비 지원, 시설 투자 등에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시기에는 인건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시설비가 감소하고 교급당 운영비는 제3차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제5차 시기에는 인건비가 다시 감소하는 반면 시설비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 총예산 대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등은 매우 낮은 비율로 정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특수교육 총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교급당 운영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이 특수교육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특수교육은 인건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인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특수교육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의 질적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특수교육 총예산의 항목과 총 교육예산의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등 항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예산 항목의 적정 비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제1차에서 제5차까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총예산, 1인당 특수교육비,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 및 우리나라 GDP, 총 교육예산,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비 항목별 비율을 조사하여 각각의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는 불규칙적인 증감 현상을 보이며 편차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을 시행하던 2014년을 제외하고 1인당 특수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4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1,253천원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2013년에는 만3~4세로 적용 대상 유아 연령을 확대하면서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해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014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조 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특수교육 시설비, 연수비 등 관련 예산을 56.7% 감축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당해 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고려해 볼 때 2014년 특수교육 예산 급감에 대한 명백한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는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장기적으로 특수교육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 동안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대한 시대

적·사회적 변화와 요구, 국가의 책무성이 뒷받침되어 제정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제3차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제2차 동안의 변화와 요구와 더불어 제정된 특수교육법의 시행과 정책 수행을 위해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지역은 1인당 특수교육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매년 불규칙적인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높은 세종시는 50,071천원이고, 가장 낮은 경기도는 26,859천원으로 세종시의 53.6%에 불과한데 이는 세종이 타 시·도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사 배치, 유급보조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은 거주 지역, 소득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 교육 복지 정책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교육부에서 시·도별 특수교육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과 명확한 원인을 구명하여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총 GDP, 총 교육예산,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제1차 계획 동안 총 GDP 대비 특수교육비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제2차 계획 동안 총 GDP 대비 특수교육비와 1인당 GDP 대비 특수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던 제3차 계획(’08~’12)이후로 현재까지 큰 증가 없이 평균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예산 증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총 GDP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 정책 수행을 위해 막대한 특수교육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예상과 크게 빗나간 결과이므로 제정된 법이 얼마나 질적으로 실행되었는지 검토 및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OECD 국가들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수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섯 차례에 걸쳐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며, 18차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각각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들은 특수교육의 현재적 상황과 제반 여건 및 지역적 기반을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계기적 연동성과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된 목표와 설득력 있는 추진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각 계획들은 강조점과 내용이 서로 차별적이고 변별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수교육비는 법 제정과 특수교육발전 정책 수립과 실행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특수교육발전 계획들이 특수교육

예산을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예산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 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총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며 그 다음으로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순이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에 따라 특수교육 총예산 항목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제2차 시기에는 인건비가 감소한 반면에 교급당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제3차 동안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0%대를 유지하였으며 교급당 운영비와 시설비는 증가하였다. 이는 제정된 법 시행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중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교육 관련 사업비, 통학비 및 급식비 지원, 시설 투자 등에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시기에는 인건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시설비가 감소하였으며, 제5차 시기에는 인건비가 감소하는 반면 시설비는 증가하였다.

특수교육은 인건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의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관련 대학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등 항목별 예산이 감소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총예산 항목의 적정 비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재정에 관한 모델 연구가 전무하다. 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항목별 예산 비율,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정 모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정 재정 확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과정별 교육비 등에 관한 기초 자료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 예산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보고를 위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요구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예산 항목별 세부 내용과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등에 대한 세부 항목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법의 시행과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밝히는 데 보다 용이하다. 즉 인건비에 포함되는 인력 범위를 통해 교원, 지원인력 등의 예산 비율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교급당 운영비의 세부 항목인 기본운영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인력,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통학비, 급식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특수교육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구분할 수 있고 시·도별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 분석을 통해 특수교육 예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학교 개교는 부지 확보, 지역주민 공청회, 공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실제 개교가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교 예산이 시설비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개교 일정이 연기될 때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이월되어 매년 중복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년도에 보고한 예산을 중복하여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 예산의 세부 항목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시·도별 특수교육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이 국가의 특수교육 정책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국내·외 특수교육 재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요함에도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한 현실이다.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법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교육 예산의 편성·집행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OECD 교육지표에 특수학교는 각각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교사, 특수교육예산 등 특수교육에 대한 자료는 OECD 교육지표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들도 2000년 초반까지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자료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논의하였다. 2005년부터 발간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보고 자료로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으나 각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할 뿐 분석·해석하여 안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특수교육 책무성과 정책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특수교육 재정과 비교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차보고서가 단순히 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정책 수행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평가도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 항목별 비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총예산에서 인건비는 50~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비는 매우 낮은 비율로 정체되어 있다. 인건비 감소가 특수교육 인력 부족으로 인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시설비 감소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낮은 연수비 책정이



교원의 역량 향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 특수교육비 항목별 비율의 적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 공교육비 항목의 비율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특수교육 정책에 따른 재정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일반 공교육비에서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특수교육비와 공교육비 차이점, 강점과 약점을 찾을 수 있으며, 예산 편성·운영 시 특수교육법과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특수교육 예산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향후 개정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ECOS (2021).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s system*. <http://ecos.bok.or.kr>  
[ECOS (202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Hwang, J. B., Lee, S. J., An, B. J., Kang, K. H., & Kim, C. A. (2007).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y, etc. to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as welfare righ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4*(2), 123-146.  
[황정보, 이선재, 안병주, 강경희, 김청하 (2007). 복지권으로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연구, 14**(2), 123-146.]
- Kim, B. H. (2005).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 Its historical implications and issu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6*(1), 449-472.  
[김병하 (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그 역사적 함의와 쟁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1), 49-472.]
- Kim, J. M. (2018).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The 25th Domestic Seminar Resource Book*.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김종무 (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성과. **제25회 국내세미나 자료집**.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미간행.]
- Kim, W. K., & Han. H. M. (2007). Issues of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in 2007.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8*(4), 95-140.

- [김원경, 한현민 (2007).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4), 95-140.]
- Kim, W. K., Lee, S. J., Kim, E. J., & Kwon, T. H. (2010). *Explanation of Special Education Law*. Seoul: Publisher of Education and Science.
- [김원경, 이석진, 김은주, 권택환 (2010). *특수교육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 *OECD Education Indicators. 2020*. Jinche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교육개발원 (2020). *OECD 교육지표.2020*.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Korea indicator system(Kindicator) (2020). *National Development Indicators*. <http://index.go.kr>
-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2020). *국가발전지표*. <http://index.go.kr>]
- Ministry of Education (2005).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06).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0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07).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0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08).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09).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0).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1).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2).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3).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4).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5).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6).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7).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8a).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8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8b).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xpense Status and Trend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and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27

- [교육부 (2018b).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8c). *The 5th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8c).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9a).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9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9b).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9b).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20a).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0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20b).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0b).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6). *Basic Research on the 5th Five-Year Development Plan for Special Education*. Asan: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국립특수교육원 (2016).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0). *A study on amendments to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Asan: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국립특수교육원 (20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Ryu, J. Y. (2012). The meaning of the disabled's participation on establishing of reforming special law.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 13(4), 207-231.
- [류재연 (2012). 장애인 당사자의 특수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참여에 대한 의미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3(4), 207-231.
- Statistics Korea (2020). *KOSIS National Statistics Portal*. <http://kostat.go.kr>
- [통계청(2020).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국문 초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비 현황 및 변화 추이

박 찬 응 · 구 영 주 · 김 현 경 · 신 주 원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에서 제5차까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로 특수교육 예산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 항목별 배분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특수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방법]**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 학술정보(KISS), DBPIA 등 검색엔진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였고 교육부의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OECD 교육지표> 등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시·도별 1인당 특수교육비는 불규칙적인 증감 현황을 보이며 편차가 매우 크다. 둘째, 우리나라 GDP, 총 교육예산, 공교육비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동안 총 GDP 대비 특수교육비와 1인당 GDP 대비 특수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총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순이다.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던 제3차 계획 이후 현재까지 특수교육예산이 큰 증가 없이 평균 4%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교육 예산 증가는 법 제정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GDP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예산에 따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수행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국가의 특수교육 책무성과 정책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비 현황

논문 접수(Received): 2021. 08. 04. / 심사 시작(Examined): 2021. 08. 04. / 게재 확정(Accepted): 2021. 08. 17.